

#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민원업무처리 기준

## 【 추진배경 】

- 소방관서, 발주자, 소방시설업자 등의 해석이 달라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신뢰도 저하 → 통일된 업무처리기준 마련(시행) 필요
- 관련규정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신속·정확·일관된 업무처리 해석 및 민원안내 필요

▶ (추진경과) 시·도 소방관서 및 관련단체 의견조회(21.9.3~9.9.), 관계자 검토회의(21.9.15)

## 1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

### □ 현실태 및 문제점

- (현행규정)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.
  - 그러나, 시행령 제4조\*에 따라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의 경우 등은 다른 법령의 공사업자가 공사할 경우 착공신고 제외, 다른 법령의 공사업자도 해당 공사를 할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.

\*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(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)

소방시설	소방시설 외 용도	관계법령	다른 법령 공사업자
제연설비	공조설비 겸용	건설산업기본법	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
비상방송설비	방송설비 겸용	정보통신공사업법	정보통신공사업자
무선통신보조설비	통신설비 겸용	정보통신공사업법	정보통신공사업자
비상콘센트설비	-	전기공사업법	전기공사업자
소화용수설비	-	건설산업기본법	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, 상·하수도설비공사업자

※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에서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방송·공조·무선이동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 비상방송설비, 제연설비,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면제

- (문제점) 도급계약 이후 착공신고 시점에서 인정불가로 발주자 및 소방공사업체 계약혼선, 단종업체의 경우 겸용설비 입찰한계

〈해석사례〉

- ❖ (갑설)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자, 타업종의 시설은 타업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므로, 겸용설비는 **소방시설공사업+타업종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만** 수주(시공)가능  
→ (문제점) 소방시설공사업 또는 타업종업을 보유한 경우, 추가로 타업종 또는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으로 보완 하여야 함.
- ❖ (을설) 겸용설비의 주기능은 평상시 소방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화재시에는 소방용으로 전환되어 그 기능만 유지하면 되는 사항으로 **타업종공사업자도** 수주(시공)가능  
→ (문제점)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타업종업자를 책임소재 및 제재할 근거없음.

-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과 타업종의 기술기준으로 정한 공사 구분이 모호하여 업종 간 분리하여 발주(도급)·시공 불가

□ 업무처리 기준

- (발주·도급)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소방시설은 다른법령에서 인정한 공사업자와 도급계약 체결 및 시공할 수 있음.

- 다만,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지 않고, **소방시설 전용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 및 시공**하여야 함.

- (신고방법) 시행령 제4조 각호에 따라 착공신고 제외 가능한 소방시설은 착공신고 의무 없음.

-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된 소방시설을 다른법령에서 인정한 공사업자가 도급계약 내용을 감리자지정신고서·감리결과보고서(첨부서류\* 포함)에 기재  
\* 타업종 등록증 사본첨부, 법제16조제1항의 감리자 업무수행사항 감리일지 및 성능시험조사표 기재

- (기술자배치) 소방기술자 배치의무는 없으나, 다른법령에 따른 책임기술자\*를 배치해야 함.

- 다른법령 책임기술자\*는 소방시설의 설계도서와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, 소방공사감리업자의 기술지도에 따라야 함.

\*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0조의 “건설기술인”, 「전기공사법」 제16조의 “전기공사기술자”, 「정보통신공사법」 제33조의 “정보통신기술자”

- (위반조치) 다른법령의 공사업자가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을 경우, 시정명령 또는 벌칙·영업정지 등 적용토록 관계기관 통보 \*향후, 소방시설공사업법 조치근거 마련(예정)

〈입법사례〉

- ❖ (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) 국토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, 시방서 및 도급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  
→ (1차)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지시, (2차) 영업정지 2개월 - 시정명령 불이행
- ❖ (전기공사업법 제22조) 시도지사는 전기공사업자가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을 경우  
→ (벌칙) 500만원 이하 벌금,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자 7년이하징역,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, (행정처분)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
- ❖ (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) 시도지사는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→ (행정처분) 영업정지 3개월

## 2 비상조명등에 대한 업무처리

### □ 현실태 및 문제점

- (현행규정)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명시되지 않고,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하고, 전기공사업자는 공사할 수 있는 근거없음
  - 「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」은 비상전원 용량·전환 등의 조치와 설치장소(거실, 복도, 계단, 통로 등)에 조도(1LX이상)일 경우 인정
  - (일반)조명설비는 전기공사업법의 전력부하설비로써 전기공사업자가 공사
- (문제점)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한 비상전원과 연계된 (일반)조명설비는 「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」에도 적합함. 대체 가능한 겸용설비임
  - 이미 설치된 조명등 외에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별도의 비상조명등 시공 불필요
  -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도급(시공)해야 한다는 일부 소방관서 해석으로 비상조명등을 도급계약서에 포함 → 허위제출

## □ 업무처리 기준

- (발주·도급)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조명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가 조명설비를 「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」 성능 이상으로 시공하는 경우 인정
  - 다만, 소방시설 전용으로써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자만 도급 및 시공하여야 함.
- (착공신고·기술자 배치 및 위반조치) '1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되는 설비 등에 대한 업무처리'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

### 3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) 소방기술자 배치

## □ 현실태 및 문제점

- (현행규정)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차등 배치
  - 국가(지방)계약법의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출자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이행
- (문제점) 공동수급체 모두 소방기술자 배치는 소방공사 규모(종류)에 따라 등급별 차등 배치(령 별표2)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- 법제처 해석
  -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간 협의·협력을 통해 운영, 업체별 소방기술자 배치(인건비 부담)는 영세한 소방업체의 경영부담 - 업계의견

해석부처	공동이행방식 소방기술자 배치	근거
법제처	복수의 공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소방기술자를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면 된다고 해석	법제처 19-0754
조달청	구성원사가 상호협의하여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기술자를 배치하고 분담이행방식은 각자가 배치토록 해석	조달청 질의회신

## □ 업무처리 기준

-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공동이행계약 이후 협의를 통해 '**공동수급 협정서**'가 체결된 **소방기술자 배치내용**에 따라 판단
  - \* (기재부 계약예규 제539호) 공동계약운용요령 「별표1」 공동수급표준협정서(공동이행방식) 활용기재
- (**공동기술자 배치**) 공동수급체가 시공하는 소방시설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① 공동수급체는 배치기준에 따라 공동(특정업체 1인)으로 소방기술자 배치에 협정하고, ② 공동으로 배치한 소방기술자의 기술지도에 따르고 공동책임에 동의한 경우
- (**기술자 각각 배치**)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소방시설의 ① 시공범위가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고 ② 발주자가 소방기술자 공동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

## 4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처리 단축방안

### □ 검토배경

- (**등록절차**)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접수·심사<**협회**> → 등록처리 후 등록증·수첩(날인) 협회로 이송<시도> → 등록증·수첩 발급<**협회**>
  - 협회(시도회)와 소방본부가 원거리일 경우 상호 우편 처리 \* 충남
  - 담당자 간 일정협의 및 방문출장으로 처리 지연 \* 부산,경기,경남,제주
- (**민원처리**) 시·도지사 관인날인 방법을 개선한 시·도의 경우 민원처리 소요 기간(**2~4일**) 단축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
  - (미시행) 충남, 부산, 경기(북), 경남, 제주

〈관인날인 개선사례〉

- ❖ (등록증) 관인날인 · 스캔후 등록시스템 업로드<시도> → 출력 · 교부<협회>
- ❖ (등록수첩) 매달 1일 1개월 수요량만큼 관인 先날인 배부<시도> → 등록처리 통보<시도> → 등록사항 기재 후 배부, 월별 발급현황 보고<협회>

\* 등록증은 A4형식으로 등록시스템 업로드 후 출력이 가능하나, 등록수첩은 145mm×90mm, 24면의 페이지의 수첩 형식으로 스캔 · 업로드 불가

□ 업무처리 개선방안

- (등록증) 등록 승인 후 관인날인·스캔하여 등록시스템 업로드



- (등록수첩) 매월(분기)별로 수요량 만큼 관인날인 배부, 현황관리



- 매월(분기)별 先날인 계획보고·배부<시도> → 등록수첩의 발급현황 제출 <협회> → 先날인 등록수첩 발급보고<시도>

- 또는, '전자이미지 관인' 날인된 등록수첩 제작 후 발급에 활용

\*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뒷면 일련번호 대조를 통하여 등록수첩 불법사용 여부 확인

□ 향후계획 \*시·도 공인조례 등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

- 미시행 시도는 등록업무 처리개선 또는 향후계획 제출('21.9월말)
-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'소방시설업 등록전용인' 등록 · 처리('21.12월말)

## 참고

## 소방시설업 등록처리 현황 (최근 3년간)

지역	처리건수(승인대상)				수첩발급 평균소요일수	발급방법	
	소계	18년	19년	20년		등록증	수첩
총 계	4,455	1,444	1,488	1,523	0~4일		
서울	859	312	251	296	0	업로드	선날인
부산	323	96	118	109	2	방문	방문
대구	134	55	38	41	0	업로드	선날인
인천	322	137	89	96	0	승인	선날인
광주	129	48	37	44	0	업로드	선날인
대전	101	24	43	34	0	업로드	선날인
울산	92	29	31	32	0	선날인	선날인
세종	52	21	17	14	0	업로드	선날인
경기	1,134	328	393	413	0	업로드	선날인
경기(북)					3	업로드	방문
강원	126	44	44	38	0	업로드	선날인
충북	151	57	38	56	0	업로드	선날인
충남	174	57	55	62	4	우편	우편
전북	186	56	66	64	0	승인	선날인
전남	190	45	80	65	0	업로드	선날인
경북	217	54	87	76	0	승인	선날인
경남	111	40	43	28	2	방문	방문
창원	62	16	20	26	0	승인	선날인
제주	92	25	38	29	2	방문	방문

\* ①업로드: 등록증을 인쇄·관인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업로드, ②선날인: 등록증 또는 수첩에 사전관인 날인, ③승인: 담당자 승인시 전자이미지관인 날인, ④방문: 등록증·수첩 출력하여 본부로 발송, 관인후 협회로 재발송